

부분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또 質問하실 委員님들.

○孫 馥委員 그런데. KBS記者가 왜 이것을 報道했을까요?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그것은 저희 주관도 좀 있습니다만 어느 記者분이 거기 利用을 아마 낮에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거기는 저희들이 晝間에는 악기같은 것 運搬하는 團員들한테만 쓰인다는 그런, 使用할 수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 와서 그것을 觀察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報告드리면, 그 映像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團員들이 3時 30分 정도 되면 연습을 끝내고 대개 갑니다.

그러면 公演은 7時 30분에 하기 때문에 觀客은 6時 30分 이후에 駐車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駐車場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撮影을 했습니다. 텅 비었다고. 이것은 一般市民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것은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言論에서 수년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施設補完 政府行事 爲主로 해서 그것을 閉鎖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전에 報道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도 聯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거기에 가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入口에 있는 분들이 請願警察입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네.

○委員長 李喆鎬 그 분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불친절한데 그런 데에서 아마 감정이 유발되니까 좀 거기에 친절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울市議會 常任委員會같은 데는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空間이 있는데도 저리 돌아서 가버리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니까 아마 그런데에서 誘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親切本位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고 本件 業務報告의 件을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業務報告

(12時 1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企劃研究室長을 맡고 있는 崔良秀입니다.

오늘 저희 大學校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구조정—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학간 질적 경쟁시대에 신속대응하고, 공립 대학교로서의 발전도모는 물론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1. 개정배경

-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대학교육의 일류화 추세
- 교육부의 시립대학 자율권 점진적 확대 계획
 - 학과신설·학생정원조정권, 교원의 지방직화, 교수임용권
- 학사행정 지도감독권을 시에 대폭 이양 예정
 - 최소한의 법령, 기준 등만 교육부가 관장

2. 주요골자

-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설치근거 마련(안

<p>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장제 신설(안 제6조) ○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정비(안 제8조) <p>3. 관련근거</p> <p>*교육법 §82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p> <p>4. 주요개정내용</p> <p>□ 대학운영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사행정 및 운영의 자율화 등 정부 대학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 시립대학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협의·조정할 전문위원회 설치 필요 ○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운영위원회설치 근거만 규정 • 위원회 구성, 기능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정 <p>□ 부총장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하고 학내 학사 행정은 부총장이 실질적으로 관장함으로써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 •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직무대행 (서울대1, 인천대1, 연세대4, 고려대3) <p>□ 부속·부설기관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설치근거가 조례, 직제규칙, 학칙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 <p>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기관(4) : 중앙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대학보건소 부설연구소(2) : 학생생활연구소, 도시새마을연구소 	<p>직제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기관(2) : 외국어학원, 시청각교육원 부설기관(3) : 수도권개발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서울학연구소 <p>학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기관(6) : 시민생활교육원, 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영자신문사, 출판부, 체육관 부설연구소(3) : 법률행정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새마을연구소, 외국어학원은 '93.9 이후 활동중지 <p>○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의 명칭 변경-부속기관, 부설연구소 • 조례에는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설치근거만 규정하고 • 현존하는 각 부속기관, 부설연구소는 직제규칙에서 명시함. 다만, 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영자신문사, 출판부, 체육관은 학칙에 규정 <p>○ 정비후 부속기관 12→6기관, 부설연구소 8→7연구소</p> <p>5.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중 ○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규칙제정 및 서울시립대학교직제규칙개정 <hr/> <p>이러한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오늘 午後 2時 財務經濟委員會에 上程되기 때문에 本文化教育委員會가 저희 大學의 所管을 맡고 있는 委員會에서 사전에 報告말씀을 드리고 저희 大學 運營에 대한 전반적인 問題에 關하여 委員님들이 高見으로써 저희들 大學運營에 대해서 診斷을 해 주십사 하고 報告말씀을 드립니다.</p> <p>이상입니다.</p>
--	---